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478호

* 해당 자료는 민원인의 이해를 돋고자 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 요건」(식약처 고시 제2020-28호) 별표 상의 목록에 대하여 검역 및 검사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목록을 설명한 것임

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(또는 지역) 축산물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(또는 지역)의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.

1. 식육 및 식육가공품

가. 식육 및 식육가공품*(멸균+처리 식육가공품은 1.나목을 따른다)

† 습열(121°C 15~20분, 또는 115°C 35분), 건열(160~170°C에서 1~2시간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네덜란드 | 쇠고기 | |
| | 거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열처리 가금육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소·돼지·산양·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(소·돼지·산양·면양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뉴질랜드 |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(사슴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) | |
| | 자비우육 | |
| | 쇠고기 | |
| 덴마크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쇠고기 | |
| 멕시코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자비우육 | |
| | 쇠고기 | |
| 미국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| 쇠고기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브라질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|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산파까타리나 주에 한함 |
| 스웨덴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스위스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스페인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아르헨티나 | 자비우육 | 중심부온도 70°C, 1분 이상 |
| 우루과이 | 자비우육 | 중심부온도 70°C, 1분 이상 |
| | 쇠고기 | |
| 아일랜드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영국 | 거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열처리 가금육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오스트리아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이탈리아 |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중심부온도 69°C, 30분 이상 또는 비가열제품 은 400일 이상 숙성처리 |
| | 열처리 가금육 | |
| 중국 |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중심부온도 70°C, 30분 이상, 75°C, 5분 이상, 80°C, 1분 이상 |
| 칠레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쇠고기 | |
| 캐나다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| 쇠고기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태국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포르투갈 |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| |
| 폴란드 | 열처리 가금육 | |
| 프랑스 |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(가금육을 원료로 한함)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핀란드 | 가금육 | |
| |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(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열처리 가금육 | |
| 헝가리 | 소·돼지·산양·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(소·돼지·산양·면양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(사슴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열처리 가금육 | |
| | 자비우육 | |
| 호주 |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(사슴고기를 원료로 한함) | |
| | 열처리 가금육 | |
| | 자비우육 | |
| | | |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 | 천연케이싱 | 「기축전염병예방법」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 준수 |
| | 토끼육 | |

* 가금육은 닭·오리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꿩의 고기를 말한다.

** 그 식육가공품은 해당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.

*** 열처리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°C에서 507초, 65°C에서 42초, 70°C에서 3.5초, 73.9°C에서 0.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처리를 말한다.

나. 식육가공품(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)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네덜란드 | 베이컨류, 햄류 | |
| 뉴질랜드 | 건조저장육류,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양념육, 천연케이싱, 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, 동물성유지류(식용우지, 원료우지에 한함) | |
| 덴마크 | 건조저장육류, 베이컨류,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햄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독일 | 소시지류, 햄류 | |
| 멕시코 | 식육추출가공품 | |
| 몽골 | 건조저장육류,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미국 | 건조저장육류, 베이컨류,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햄류, 양념육류(갈비가공품, 천연케이싱, 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에 한함), 동물성유지류 | |
| 베트남 | 식육추출가공품 | |
| 벨기에 | 햄류 | |
| 벨라루스 |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양념육에 한함) | |
| 북한 | 식육추출가공품 | |
| 브라질 | 식육추출가공품, 햄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스웨덴 |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스페인 | 건조저장육류, 베이컨류, 소시지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 | |
| 싱가포르 | 햄류 | |
| 아르헨티나 | 건조저장육류,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에 한함) | 식육추출가공육 양념육 변경 |
| 영국 |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우루과이 | 식육추출가공품, 햄류, 양념육류(양념육에 한함) | 식육추출가공육 양념육 변경 |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이탈리아 | 베이컨류, 소시지류, 햄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인도 | 식육추출가공품 | |
| 인도네시아 | 식육추출가공품, 햄류 | |
| 일본 | 식육추출가공품, 햄류 | |
| 중국 | 건조저장육류, 베이컨류, 소시지류, 양념육류(갈비가공품, 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 | |
| 칠레 | 소시지류, 햄류 | |
| 캐나다 | 건조저장육류, 베이컨류, 소시지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 | |
| 콜롬비아 | 식육추출가공품 | |
| 태국 |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 | |
| 파라과이 | 식육추출가공품 | |
| 포르투칼 | 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, 식육추출가공품, 동물성유지류(식용돈지에 한함) |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것에 한함 |
| 폴란드 | 베이컨류, 소시지류, 햄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) | |
| 프랑스 |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 | |
| 핀란드 | 소시지류 | |
| 필리핀 | 소시지류, 양념육류(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 | |
| 헝가리 | 베이컨류, 소시지류 | |
| 호주 | 건조저장육류, 베이컨류, 소시지류, 식육추출가공품, 양념육류(갈비가공품, 분쇄가공육제품, 양념육, 천연케이싱에 한함), 햄류, 동물성유지류(식용우지, 원료우지에 한함) | |

* 쇠고기, 산양·면양고기, 사슴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육가공품은 해당원료를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단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멸균처리 이상의 식육가공품은 나.의 목록을 따른다.

2. 원유 및 유가공품

가. 원유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
| 미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덴마크·스웨덴·핀란드 | 원유 | |

나. 유가공품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|--------|
| 그리스 | 발효유류, 아이스크림류, 치즈류 | |
| 남아프리카공화국 | 아이스크림류 | |
| 네덜란드 | 농축유류, 버터류, 버터유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노르웨이 | 분유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뉴질랜드 | 버터류, 버터유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대만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아이스크림류 | |
| 덴마크 |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독일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발효유류, 버터류, 버터유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라트비아 | 유청류 | |
| 러시아 | 버터류, 분유류, 유당, 아이스크림류 | |
| 룩셈부르크 | 유크림류 | |
| 리투아니아 |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유당, 유청류, 치즈류 | |
| 말레이지아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치즈류 | |
| 멕시코 | 버터류, 아이스크림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미국 | 가공유류(가공유, 강화우유에 한함), 농축유류, 발효유류, 버터류, 버터유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방글라데시 | 버터류 | |
| 벨기에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버터류, 버터유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청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불가리아 | 치즈류 | |
| 브라질 | 아이스크림류, 치즈류 | |
| 사우디 아라비아 | 치즈류 | |
| 사이프러스 |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스웨덴 | 분유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스위스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스페인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유청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슬로바키아 | 유크림류 | |
| 싱가포르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아랍에미리트 | 버터류 | |
| 아루바 | 분유류 | *네덜란드령 |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|----|
| 아르헨티나 | 버터류, 분유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청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아일랜드 |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에스토니아 | 버터류, 분유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에콰도르 | 치즈류 | |
| 영국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청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오스트리아 | 가공유류, 발효유류, 분유류, 유당, 우유류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우루과이 | 버터류, 분유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청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우크라이나 | 농축유류, 분유류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 | |
| 이스라엘 | 유당 | |
| 이탈리아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당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인도 | 버터류, 분유류, 유당, 유청류, 치즈류 | |
| 일본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농축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중국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유크림류 | |
| 체코공화국 | 가공유류, 농축유류,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우유류, 유청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칠레 | 농축유류, 분유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카자흐스탄 | 치즈류 | |
| 캐나다 |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크로아티아 | 치즈류 | |
| 태국 | 아이스크림류 | |
| 터키 | 아이스크림류, 유당, 유청류, 치즈류 | |
| 파키스탄 | 버터류, 분유류 | |
| 포르투갈 | 우유류(우유에 한함) | |
| 폴란드 |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, 유청류, 치즈류 | |
| 프랑스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우유류(우유에 한함)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핀란드 | 분유류, 유청류, 치즈류 | |
| 필리핀 | 가공유류(가공유에 한함), 분유류, 아이스크림류, 유크림류, 치즈류 | |
| 헝가리 | 치즈류 | |
| 호주 | 농축유류, 발효유류, 버터류, 버터유, 분유류, 아이스크림 | |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|
| | 류, 아이스크림믹스류, 우유류(우유에 헌함), 유단백가수분해식품, 유당, 유청류, 유크림류, 조제유류, 치즈류 | |
| 홍콩 | 아이스크림류 | |

3. 식용란 및 알가공품

가. 식용란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|-----|----|
| 뉴질랜드 · 덴마크 · 스페인 · 스웨덴 · 호주 · 네덜란드 · 일본 · 캐나다 · 영국 · 미국 · 태국 · 프랑스 · 핀란드 | 식용란 | |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|
| 중국 | 난백분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분, 전란액, 피단 | |
| 캐나다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분, 전란액 | |
| 태국 | 전란액, 난백액, 난황액, 전란분, 난황분, 난백분, 알가열제품, 피단 | |
| 페루 | 난백분 | |
| 프랑스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전란분 | |
| 핀란드 | 전란액, 난백액, 난황액, 전란분, 난황분, 난백분, 알가열제품, 피단 | |

나. 알가공품

| 국가 또는 지역 | 종류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|
| 네덜란드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전란분, 전란액 | |
| 대만 | 피단, 알가열제품 | |
| 덴마크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전란분, 전란액 | |
| 독일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액, 전란분 | |
| 라트비아 | 난황액 | |
| 말레이시아 | 난백액, 난황액, 전란액 | |
| 멕시코 | 난황액 | |
| 미국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분, 전란액, 피단 | |
| 벨기에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 | |
| 스웨덴 | 난백분, 난황분, 전란분 | |
| 스위스 | 난황액 | |
| 스페인 | 난백분 | |
| 우크라이나 | 난백분, 난황분, 전란분 | |
| 이탈리아 | 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난황액, 전란분, 전란액 | |
| 인도 | 난백분, 난황분, 전란분, 전란액 | |
| 일본 | 난백분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 | |